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47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김재원·용혜인·신장식

박은정 · 강경숙 · 황운하

임오경 · 어기구 · 이해민

박수현 · 김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변동의 공시를 통해 저작권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하지만 위탁 저작물의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별도의 공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저작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등록 저작물이 증가하는 실정임.

또한,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대형 제작사에서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 계약을 우회하여 저작자에게 직접양도를 요구하거나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등을 체결하여 창작자의정당한 권익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본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저작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4조"를 각각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2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		
력) (생 략)	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제106조제		
	1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제1		
	항제1호의 사항을 등록하지 않		
	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u>다.</u>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조 및 <u>제54조</u> 에 따른 등록은	<u>제54조제1항</u>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			
함으로써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 5. 제53조제1항 또는 <u>제54조</u>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생략)
- ③ ~ ⑧ (생 략)
-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③ (생 략)
-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u>제54조</u>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제54조제1
<u> </u>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u>제54</u>
조제1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제54조제1
<u>항</u>

- ②·③ (생 략)
 제13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있다.
 - 1. (생략)
 -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 4.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2 <u>제54조제1항</u>
3. ~ 4. (현행과 같음)